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정보도등의 청구방식 확대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43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정보도등의 청구방식 확대	2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처리기한 단축	5
3. 기한 내 정정보도 수용 여부 미통지 시 과태료 신설	8
※ 참고자료	
1.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6. 28.

다.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정보도 청구를 서면 이외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제한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아울러 14일인 조정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정기일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로 축소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도 가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 제19조 및 제34조).

Ⅲ. 검토의견

1. 정정보도등의 청구방식 확대(안 제15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정정보도등¹⁾을 서면 외에 전화, 팩스 등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 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 게 <u>서면으로</u>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 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 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 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 ----- -- <u>서면 또는 전화, 팩스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 서 등으로</u> ----- ----- ----- ----- ----- ----- ----- -----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1) 정정보도, 추후보도, 반론보도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정정보도등²⁾의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하도록 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다양한 청구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온 바,

개정안은 서면 외에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정정보도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표 1] 유사 입법례

「의료기기법」
제31조(부작용 관리)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u>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u> 그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보도등의 청구이유·정정내용·정정보도문 등은 이에 대한 정정보도등과 후속 구제절차의 핵심 사항으로, 전화 등 구술을 통한 청구는 접수자의 사실오인 및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방법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청구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로 수정하는 의견³⁾을 제시하였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한편, 전화나 전자문서(이메일)의 경우 청구의 수신시점 및 접수 사실을 입증할 방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청구의 경우에는 각 언론사가 청구 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대통령령의 보완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서 전화와 팩스를 제외하고,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 방식을 제시하였음.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의견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 <u>서면 또는 전화,</u> <u>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전자문서 등으로</u> -----.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 <u>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u> <u>홈페이지를 통해</u> -----.
② ~ ⑧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처리기한 단축(안 제19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처리기한을 조정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조정) ① (생략)	제19조(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u>14일</u>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 <u>7일</u> ----- ----- ----- -----.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조정의 처리기한을 14일로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으로, 언론보도등의 전파력이 강해 짧은 기간에도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음.

다만, 최근 인터넷 중심으로 매체 환경이 변화하면서 언론매체 수와 함께 조정신청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조정건수는 약 70% 증가한 데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중재위원은 2014년 85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된 이후 추가 증원된 바 없어 현재 법정 처리기한 내에 사건이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 청구건수는 2019년 3,544건에서 2023년 4,085건으로 증가하였고, 사건 평균처리일수 역시 같은 기간 18.1일에서 21.1일로 증가하였음.

[표 2] 연도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청구현황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접수건수	3,544건	3,924건	4,278건	3,175건	4,085건
평균처리일수	18.1일	19.2일	17.9일	14.8일	21.1일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따라서 중재위원의 증원 등을 통한 업무 과중을 해소하지 않고 법정 처리 기한을 7일로 단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과도한 기준일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가 동 기한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기관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절차를 살펴보면, 접수 이후 조정신청서 및 출석요구서 등 일체의 자료를 언론사 측에 전달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언론사 측에서도 신청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 및

답변서 등을 준비할 기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담당 중재부에서 보도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때로는 별도의 증거조사를 실시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7일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봄.

3. 기한 내 정정보도 수용 여부 미통지 시 과태료 신설(안 제34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정정보도등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②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자</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관련 조문: 법 제15조제2항⁴⁾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청구인이 정정보도등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중재, 소송 제기 등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제2항에서는 피해자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등을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청구한 경우, 3일 이내에 정정보도등의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후속절차를 조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언론사등이 기한(3일) 내 정정보도등의 수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제재 규정을 둠으로써,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어 보임.

다만, 한국신문협회 및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언론사의 정정보도 수용 여부 미통지와 같이 절차상의 오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과태료의 신설은 제재의 과중 정도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통지 기한 내 청구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 발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개정안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언론사등이 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개정안의 취지인 피해자가 후속절차를 조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법무부 (2024.7.23.)	• (정정보도 청구방법) 정정보도청구는 정정보도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대상보도의 일시, 위치, 내용 등이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서면·전자문서 등과 달리 전화는 이를 담보하기 어려움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024.7.10.)	• (정정보도 청구방법) 현행법상 당사자는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청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언론사등에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구술 형식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것은 정확한 취지 전달이 어려워 해당 조항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정 법정처리기한 단축) 출석요구서 등 일체의 자료를 언론사 측에 전달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신청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 및 답변서 등을 준비할 기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로는 별도의 증거조사를 실시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7일로의 단축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3년도 평균 처리일수는 21.1일에 달함. • (과태료) 과태료의 신설은 제재의 과중 정도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7.5.)	• (정정보도 청구방법) 전화나 전자문서(이메일)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의 접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한국신문협회 (2024.7.12.)	• (정정보도 청구방법) 전화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의 어려움, △의사소통 오류, △자료 전달 방식 등의 문제점이 있음. 팩스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도 △원본 훼손의 가능성, △접수 정보의 누락, △수신 확인의 어려움 등 오류가 발생. 또한, 정정보도 요건이 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비판·의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무차별적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 (조정 법정처리기한 단축) 조정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에 쫓겨 원만한 조정이 어렵거나 조정 결과의 오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과태료) 언론사의 정정보도 수용 여부 미통지와 같이 절차상의 오류 등에 대해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과잉 규제임.

한국온라인신문협회 (2024.7.12.)	• (조정 법정처리기한 단축) 조정일을 7일로 축소할 경우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 • (과태료)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까지 과태료 조항까지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는 것임
---------------------------	---